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 11. 26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4호, 2024. 11. 26., 일부개정]

[전체조문보기](#)

제31조의26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) ① [별 제40조제2항](#)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는 [별표 3의9](#)와 같다. 다만,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등은 [국방부장관이 정하는](#) 바에 따른다. <개정 2018. 7. 23.>

② [별표 3의9](#)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, 과목별 시간,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[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.](#) <개정 2013. 3. 23., 2018. 7. 23.>

[본조신설 2012. 6. 28.] [제목개정 2018. 7. 23.]

제31조의27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) ① [별 제40조제2항](#)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7. 23.>

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·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·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. 다만,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. <개정 2018. 7. 23., 2021. 10. 12.>

[본조신설 2012. 6. 28.] [제목개정 2018. 7. 23.]

관 **연** **□ 제40조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)**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,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(이하 "검사대상기기관리자"라 한다)를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4. 17.>

규 **생**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4. 17.>

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4. 17.>

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4. 17.>

[제목개정 2018. 4. 17.]

제40조(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)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,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(이하 "검사대상기기관리자"라 한다)를 선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4. 17.>

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, 직무범위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4. 17., 2025. 5. 27.>

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4. 17.>

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여행·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5. 27.>

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8. 4. 17., 2025. 5. 27.>

[제목개정 2018. 4. 17.]

[시행일: 2026. 5. 28.] 제40조

산업안전보건법

[시행 2020. 1. 16.] [법률 제16272호, 2019. 1. 15., 전부개정]

제140조(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)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·면허·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·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자격·면허·경험·기능,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"은 "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"으로 본다.

한국에너지공단에서 **추진하고 있는 사업**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사업분야 및 사업소개

FAQ

고객의 소리

1 분야별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. 궁금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라며, 좀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[고객의 소리]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사

효율

홍보물요청

자금

에너지절약전문기업

수요관리

산업

건물

수송

기후변화협약

집단에너지

선택하세요. ▼

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.

Q 검색

번호	제목	다운로드
16	[중앙통제-조종설비] 조건은 무엇인가요	첨부파일 없음
15	24시간 가동하는 검사대상기기의 법정관리자 수	첨부파일 없음

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외9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조종하여야 하므로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로 24시간 가동되는 보일러인 경우에는 각 조별로 1인 이상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.

▶ 선임신고

- 보일러 설치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([규제](#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0조제3항 및 [규제](#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」 제31조의28제1항 본문).
 - ▶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
 - ▶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

▶ 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

-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([규제](#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0조제4항 본문).
- 다만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도지사”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([규제](#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40조제4항 단서 및 [규제](#)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」 제31조의28제3항).
 - ▶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
 - ▶ 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

▶ 위반 시 제재

-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,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)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78조제4항제9호의4).